후견제도 D 000 ٥ 0 0 000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제도]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도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이 콘텐츠에서는 국민들이 그 동안 다소 생소했던 후견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후견제도	1
1. 후견제도	4
1.1. 후견제도의 개념	4
1.1.1. 후견의 의의와 종류	4
2. 미성년후견	6
2.1. 후견의 개시	6
2.1.1. 미성년후견의 개시	6
2.2. 후견사무와 감독	7
2.2.1. 미성년후견사무	7
2.2.2. 미성년후견감독 1	1
2.3. 후견의 종료1	3
2.3.1. 후견의 종료1	3
3. 성년후견1	6
3.1. 성년후견의 의의1	6
3.1.1.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1	6
3.2. 성년후견 1	8
3.2.1. 성년후견의 개시1	8
3.2.2. 성년후견사무 2	1
3.2.3. 성년후견감독 2	4
3.2.4. 성년후견의 종료 2	6
3.3. 한정후견 2	7
3.3.1. 한정후견의 개시 2	7
3.3.2. 한정후견사무 3	0
3.3.3. 한정후견감독 3	2
3.3.4. 한정후견의 종료 3	4
3.4. 특정후견 3	5
3.4.1. 특정후견의 개시 3	5
3.4.2. 특정후견사무 3	7
3.4.3. 특정후견감독 3	9
3.4.4. 특정후견의 종료 4	1
3.5. 임의후견4	2
3.5.1. 임의후견의 개시 4	2
3.5.2. 임의후견 감독 4	4
3.5.3. 임의후견의 종료 4	7



1. 후견제도

1.1. 후견제도의 개념

1.1.1. 후견의 의의와 종류

- ☑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후견의 의의
 -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 □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제도
 - 』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14참조).

종류	내용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임의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20	미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피후견인	선임사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후견인	자격	친족 또는 제3자	친족 또는 제3자
			(법인 제외)	(법인 포함)
		수	1명	여러 명도 가능
		선임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선임	법원의 선임
		감독기관	법원, 후견감독인	법원, 후견감독인
	후견감독인	선임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선임	법원의 선임
	공시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후견등기부



2. 미성년후견

2.1. 후견의 개시

2.1.1. 미성년후견의 개시

- □ 미성년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
 -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 🕠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유언 또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으로 개시됩니다.
 - 미성년후견 개시사유
 - □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8조).
 - 』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25조 및 제928조).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27조제1항 및 제928조).
 -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 909조제1항).

■ 미성년후견 개시방법

- _ 유언에 의한 지정
 -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1조제1항).
 - 》 가정법원은 위에 따라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제2항).
- ▮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 》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 》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 932조제2항).



- 》 친권자는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합니다(「민법」 제932조제3항).
- 』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 의견청취절차
-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 65조제1항).
-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4항).
- 미성년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성년후견과 달리 한 명으로 제한됩니다(「민법」 제930조제1항).
 -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및 제937조).
 - 。법인
 - 。미성년자
 - 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u>.</u>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항방이 불분명한 사람
 -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 □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미성년후견인은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후견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제80조, 제82조 및 「<u>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u>」 양식 16).
 - □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 지정에 관한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 』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 : 재판서 등본
 -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 미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2. 후견사무와 감독

2.2.1. 미성년후견사무



- □ 미성년후견사무의 범위는 후견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민법」 제946조).

□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 후견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및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6조).

□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등
 -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등의 사항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13조부터 제914조까지 및 제945조).
 - 및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 🗽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 다만, 2021년 1월 26일 전에 미성년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징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에 따릅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7905호> 제2조).
-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
 -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갖습니다.
 - 나이위반 혼인의 취소(「민법」 제817조)
 - 》 13세 미만인 피후견인이 양자가 될 경우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는 것(「민법」 제869조제2항)
 - 》 양자가 된 13세 미만인 피후견인이 파양청구를 할 경우 그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하는 것(「민법」 제 906조제1항)
 - 🔈 13세 미만인 피후견인이 친양자가 될 경우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는 것(「민법」 제908조의2제1항)
 - 및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는 입양의 취소청구(「민법」 제886조)
 -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민법」 제999조)
 - » 상속의 승인 및 포기(「민법」 제1019조 및 제1020조)
 - 🏿 혼인무효소송 등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가사소송법」 제23조, 제28조 및 제31조)
-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
 -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민법」 제801조 및 제808조제1항).
- 친권의 대행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



948조제1항).

- □ 이러한 친권대행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미성년후견인은 직접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해 자신이 직접 후견인이 되는 것과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민법」 제948조제2항).
 - ※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비슷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입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 _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 미성년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1조제1항).
 - 및 위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41조제2항).
 - 』 미성년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943조).
 - ※ '긴급 필요한 경우'란 재산목록의 작성 전에 이를 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하여 후일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경우를 말합니다(<u>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368</u> 판결).
 -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예:상속인)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함]에 대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다만,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미성년자소유의 토지를 매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를 다시 매수한 사람(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없음을 이유로 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참조>

- □ 미성년후견인의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은 위와 같은 재산조사와 그 목록작성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44조).
- 』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채권·채무의 제시
 - 미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942조제1항).
 - 』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위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942조제2항).
 - □ 미성년후견인의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은 위와 같은 채권·채무의 제시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44조).
- _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제1항).
 - 》다만, 피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49조제2항).



-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 스스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 》 다만, 위의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 』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후견인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 950조제1항).
 - 。 영업에 관한 행위
 - 및 금전을 빌리는 행위
 -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소송행위
 -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미성년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
-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제한
 - 제3자가 무상으로 피후견인에게 재산을 수여하면서 후견인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후견인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18조제1항 및 제956조).
 - 위 경우에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을 수여받은 자 또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777조, 제 918조제2항 및 제956조).
 -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인은 법원에 그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및 제949조의3).
 - ※ '이해상반행위'란 미성년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 』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1항).
 - 》위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51조제2항).
- □ 미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보수 및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수의 지급 및 사무비용의 처리
 - 및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 미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 955조의2).

2.2.2. 미성년후견감독

- □ 미성년후견감독제도는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미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 』 미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 □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됩니다.
 - _ 유언에 의한 지정
 - ◘ 미성년자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 ※ 유언의 방식, 절차, 효력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u>유언</u>』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 □ 가정법원은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 』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40조의7).
-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40조의7).

□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에게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지시
 - 』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그 후견사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
- ▮ 후견사무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미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 939조 및 제940조의7).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40조의7).

◘ 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하고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 930조제2항 및 제940조의7).
 - 》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제1항 및 제2항).
 -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49조의2제3항).
 - 및 법인도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및 제940조의7).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및 제940조의7).
 - 미성년후견인의 가족
 - 。미성년자
 - 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및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및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 ※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779조).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 미성년후견감독이 개시되면 미성년후견감독인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제83조의4 및 「<u>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u>」 양식 16).
 -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 및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 : 재판서의 등본



- 후견사무의 감독 등
 - 』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1항).
 - □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제2항).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3항).
 - 』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 □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되면 미성년후견감독인은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5제1항).
- 』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5제2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8).
 - □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 □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 미성년후견감독인 경질신고

- □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제1항).
- 』 미성년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3제2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7).
 - □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 』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취임한 연월일

■ 보수와 직무비용의 처리

- 』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55조).
-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55조의2).

2.3. 후견의 종료

2.3.1. 후견의 종료

- □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보호필요성 소멸, 후견인 사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 후견필요성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및 제928조).
 - 및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
 - 및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및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 및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란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는 민사법상 성년자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 후견 관계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 미성년후견인 사망
 - .. 미성년후견인 사임
 - 』 미성년후견인 변경

□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의 계산
 - 』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 》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 957조제2항).
 - 』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미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 미성년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 후견종료 시 긴급사무의 처리
 - □ 미성년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
- ▮ 후견종료의 통지 및 신고
 - 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
 - 』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8).
- □ 미성년후견인은 사임하거나, 변경 등으로 인해 경질될 수 있습니다.

사임으로 인한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 미성년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 □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제3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8].

■ 미성년후견인 변경

- □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 》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해야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2항).
-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재판으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 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제3항 및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6).

■ 미성년후견인 경질 신고

및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7).



3. 성년후견

3.1. 성년후견의 의의

3.1.1.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 ☑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고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 』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참조]

금치산·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제도 자연인 자연인, 법인 후견 1인 복수 가능 인 <mark>후견인 자격 및 순위 有</mark> ※배우자→3촌 이내 직계혈족 방계혈족 중 최근친 연장자 순 선임 가정법원이 결정(법정후견) 후견계약에 따름(임의후견) 재산관리 뿐 아니라 지원 재산관리 중심 범위 신상결정 가능 잔존능력 무시 잔존능력 존중(보충성) 행위 능력 탄력적 적용가능 탄력적 조치 불가 후견 친족회가 감독(형식적) 후견감독인이 감독(실질적) 감독

<기존 제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2면]

■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제1항).



- ▷ 다만, 위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2018년 7월 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제2항).
- ☑ 성년후견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참조).

※ 어떤 사례에 성년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 현수씨(가명, 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외아들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현수씨의 어머니는 70대 중반이 넘어서고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자신이 죽고 난 뒤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나 재산으로 인해 가까운 친척도 믿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현수씨의 주변에 현수씨를 도울 사람으로는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현수 씨의 사촌형 A씨,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 B씨, 현수씨의 특수학교 담임이었던 c씨가 있습니다.
- <u>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A씨가 후견인이 되고, B와 C가 후견감독인이 된다면 어머니 사후에도 현수씨의</u>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 성년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성년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 어떤 사례에 한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 현우씨(가명, 지적장애 2급)는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버려져 시설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시설에서는 현우씨에 대한 장애인연금급여 등 복지급여와 기부금, 직업재활시설에서 받은 급여 등을 잘 관리해 주었고 그덕분에 현우씨의 통장에는 수 천 만원이 모였으며 이에 현우씨는 시설을 나와 자립할 계획을 세우게되었는데요. 이후 우연히 가족들이 시설로 찾아왔고 현우 씨는 반가운 마음에 자신의 통장을 자랑했습니다. 이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가족들은 현우 씨를 시설에서 데리고 나갔는데, 수개월 뒤 현우 씨의 저축은 가족이 다 소모해 버렸고 현우 씨는 혼자 집에 방치되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 한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한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_ 특정후견

□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 어떤 사례에 특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 》 김복동 할머니(가명, 75세. 치매)는 남편 사별 후 혼자 생활하다 최근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하지 않고 할머니께서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기 싫어해 홀로 생활하시는 중인데요. 그러나 최근 할머니께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는 등 이상행동이 보이자 자녀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여 탕진할까 걱정입니다.
- <u>장남을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주택의 매매는 후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우려되는</u>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 특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u>성년후견-특정후견</u>>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_ 임의후견

및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 어떤 사례에 임의후견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 》 길동씨(가명, 80세)는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입니다. 이에 길동씨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평소 사이가 소원한 장남 대신 차남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데요.
- <u>길동씨가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경우 차남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u> 선임할 경우 임의후견계약의 내용대로 차남이 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u>

[출처 :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10면]

※ 임의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임의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성년후견

3.2.1. 성년후견의 개시

-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성인은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 □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 관할



-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 □ 다만,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 _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전자소송포털)].
 - 및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진단서 1통
 -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판절차

-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제2항).
-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
-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능력의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성년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합니다(「민법」 제14조의3조제1항).
- ※ 한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한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특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특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판의 고지

및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및 성년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게 심판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제1항).

■ 즉시항고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 36조제1항제1호가목).

■ 후견등기 촉탁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 후견등기란 어떤 제도인가요?

- 》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후견등기제도가 생겼습니다.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무엇인가요?

-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후견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받나요?

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거래시점 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후견등기에 관한 정보는 사람의 판단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고도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거래의 안전보호와 사생활보호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정한 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피후견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u>대법원 블로그-법원News-성년후견제도 안내</u> 참조>

□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됩니다.

-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1항).



- □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2항·제3항).
-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제4항).

□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_ 성년후견인의 선임
 - 및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29조 및 제936조제1항).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제2항).
 -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 』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 . 성년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 930조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 。미성년자
 - 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₃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및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3.2.2. 성년후견사무

- ☑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 _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6조).
 - 및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 』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 947조의2제1항).
-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2항).
 - 』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3항).
 - 》위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4항).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5항).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제1항).
 -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 。 영업에 관한 행위
 -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및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소송행위
 -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
 -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



-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 ※ "추인"이란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등이 있습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성년후견인의 권한 제한
 -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49조제2항).
 - 』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 949조의3).
 - ※ "이해상반행위"란 성년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년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1항).
 - 》위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2항).
 -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 √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보수 및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수의 지급 및 사무비용의 처리
 -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 』 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 955조의2).

※ 후견관련 비용의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정법원은 취약계층을 위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제1항).



3.2.3. 성년후견감독

- ☑ 성년후견감독제도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 』 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성년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40조의4제1항 및 제2항).
 - 》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36조제3항 및 제940조의7).
 - □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40조의7).
 - . 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성년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40조의7).
 - 』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40조의7).
 -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54조).
 - 』 성년후견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성년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 』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40조).
 -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 45조의3제1항제5호).



- □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 』 성년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 성년후견감독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40조의7).
 - 》 성년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제1항 및 제2항).
 - 》 여러 명의 성년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49조의2제3항).
 - 및 법인도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및 제940조의7).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및 제940조의7).
 - 。 성년후견인의 가족
 - 。미성년자
 - 및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₃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 ※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779조).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성년후견사무의 감독 등
 - 성년후견감독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년후견감독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40조의7).
 - 』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1항).
 - 성년후견감독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제2항).
 -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3항).



- 』 성년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성년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 』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를 대신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47조의2제3항).
 - 》 위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7 947조의2제4항).
 -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매도,임대,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임대차의 해지,전세권의 소멸,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47조의2제5항).
- 보수와 직무비용의 처리
 - □ 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성년후견감독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55조).
- 』 성년후견감독인이 성년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55조의2).

3.2.4. 성년후견의 종료

- ☑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성년후견종료심판등으로 종료됩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으로 인한 후견의 종료
 - 』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 690조,「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11조).
 - 후견 관계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39조, 제940조).
 - .. 성년후견인 사임
 - 。 성년후견인 변경
- ☑ 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의 계산
 - 』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 》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 957조제2항).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 성년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성년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성년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 성년후견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
 - 』성년후견종료 시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
- 상대방에 대한 성년후견종료의 통지
 - 』성년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
- ... 성년후견종료등기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성년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종료심판에 따른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9조).
 - 』 성년후견종료등기는 피성년후견인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제29조제2항).

3.3. 한정후견

3.3.1. 한정후견의 개시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 _ 관할
 - 』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 □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2조제1항).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성년후견제도」(전자소송포털)].



-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진단서 1통
-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판절차

-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
- 』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능력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한정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합니다(「민법」 제14조의3조제2항).
- ※ 성년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성년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특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특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판의 고지

-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한정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및 한정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게 심판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제1항).
- 』 위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제2항).

■ 즉시항고

및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 후견등기 촉탁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 제9조).



□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피한정후견인 본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됩니다.

- 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1항).
 - 》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위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2항).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3항).
 -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조제4항).

◘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 한정후견인의 선임
 - 』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2 및 제959조의3제1항).
 -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제2항 및 제959조의3제2항).
 -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3제2항).
 -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한정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한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3제2항).
- _ 한정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 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3제2항).
 -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및 제959조의3제2항).
 - 。미성년자
 -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항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Þ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 》「민법」은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937조).
- 》 외국의 예를 보면 피후견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후견인이 됩니다. 제3자 후견인으로는 무보수로 지원하려는 이웃들이나 자원봉사자들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에 종사중인 사람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는 등 별도의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한편 「민법」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을 고려하고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936조제4항).
 이에 따라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년 6월 24일자 보도자료, 6면 참조)

3.3.2. 한정후견사무

▶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 및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6).
 -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결정
 - 』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 947조의2제1항 및 제959조의6).
-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2항 및 제959조의6).
 - 』 피한정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6).
 - 》 위의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한정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4항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5항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제1항 및 제959조의6).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및 제959조의6).
 - .. 영업에 관한 행위
 -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소송행위
 -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감독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 ※ "추인"이란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등이 있습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한정후견인의 권한 제한
 -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한정후견인은 법원에 피한정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및 959조의6).
 - ※ '이해상반행위'란 한정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한정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1항 및 제959조의6).
 - 》위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2항 및 제959조의6).
 -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 √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보수 및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수의 지급 및 사무비용의 처리
 - 』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 955조의2 및 제959조의6).

3.3.3. 한정후견감독

- ☑ 한정후견감독제도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한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 한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한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한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5제1항).
 -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5제2항).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한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5제2항).
 - 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한정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5제2항).
 -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한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5제2항).

-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한정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54조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한정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한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3제2항).
 - 』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한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3제2항).
 -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한정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 한정후견감독인은 한정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 한정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 한정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 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5제2항).
 - 》 한정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한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5제2항).
 - 》 여러 명의 한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한정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한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5제2항).
 - 및 법인도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및 제959조의5제2항).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및 제959조의5제2항).
 - 。 한정후견인의 가족
 - » 미성년자
 -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u>.</u>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및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 ※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779조).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한정후견사무의 감독 등

- 한정후견감독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년후견감독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5제2항).
- 한정후견감독인은 한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한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1항 및 제959조의5제2항).
- 』 한정후견감독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제2항 및 제959조의5제2항).
- 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한정후견감독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3항 및 제959조의5제2항).
- 한정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한정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및 제959조의6).
-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 』 피한정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그를 대신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5제2항).
 - 》 위의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한정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47조의2제4항 및 제959조의5제2항).
 - 』 한정후견감독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5항 및 제959조의5제2항).
- 보수와 직무비용의 처리
 - 』 법원은 한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한정후견감독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5제2항).
 - 한정후견감독인이 한정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및 제959조의5제2항).

3.3.4. 한정후견의 종료

☑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의 사망, 한정후견종료심판등으로 종료됩니다.

- 피한정후견인의 사망으로 인한 후견의 종료
 -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한정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14조).
- 후견 관계의 종료
 -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39조, 제940조 및 제959조의3제2항).
 - . 한정후견인 사임
 - . 한정후견인 변경
- ☑ 한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의 계산
 - 』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및 제959조의7).
 - 》 위의 계산은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 957조제2항 및 제959조의7).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및 제959조의7).
 - 한정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한정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한정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및 제959조의7).
 - 한정후견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
 - 한정후견종료 시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한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한정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의7).
 - 상대방에 대한 한정후견종료의 통지
 - 한정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의7).
 - 한정후견종료등기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한정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종료심판에 따른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9조).
 - 』 한정후견종료등기는 피한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3.4. 특정후견

3.4.1. 특정후견의 개시

- 특정사무에서 또는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성인은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제도의 의의



- 』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 중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은 지속적·포괄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해나가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 □ '특정후견'은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제1항참조).

■ 특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 관할

- 특정후견심판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 및 다만,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2제1항).
- 』특정후견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성년후견제도 (전자소송포털)].
 -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조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진단서 1통
 -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 특정후견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판절차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민법」 제14조의2제2항 및 「가사소송법」 제 45조의3제1항제1호).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 45조의2제2항).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 14조의2제3항).

_ 심판의 고지

및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특정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및 특정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게 심판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제1항).

■ 즉시항고

』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의 심판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

. 후견등기 촉탁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 특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특정후견인의 선임

-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써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8 및 제959조의9제1항).
 -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제2항 및 제959조의9제2항).
 -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특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9제2항).
- 』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특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특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특정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특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9제2항).

■ 특정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 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9제2항).
-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및 제959조의9제2항).
 - 。미성년자
 - 및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₃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및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3.4.2. 특정후견사무



□ 특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 특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12).
 -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및 제959조의12).

■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이 되어 특정 사무를 처리합니다.

-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 』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2).
 -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12).
-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대리
 - 』 후원할 사무의 성질에 따라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특정후견인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59조의11제1항).
 - 』위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1제2항).
- 및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특정후견인의 권한 제한
 -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59조의12).

■ 특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보수 및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_ 보수의 지급 및 사무비용의 처리
 - 』 법원은 특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특정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12).
 - 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 955조의2 및 제959조의12).

※ 성년후견보다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던데 왜 그런가요?

-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후견개시에 따른 본인의 행위능력 제약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본인의 상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신적인 능력의 제약이 많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일수록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성년후견의 경우 본인의 행위능력을 포괄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존중하여 주어야 한다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 상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하지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영역에 한해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가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도



우리의 성년후견에 해당하는 '후견'의 결정이 대부분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우리 제도에서는 향후 법정후견의 종류 중에서 성년후견보다는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이 보다 활성화되고 보편화되어야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후견의 경우 통장관리나 계약행위 등 몇 가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으면 되므로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년 7월 1일자 보도자료, 5면 참조)

3.4.3. 특정후견감독

- 특정후견감독제도는 특정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특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 특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특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_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0제1항).
 -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 』 가정법원이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특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특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특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 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특정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 939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 』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특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및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특정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및 제959조의12).
 - 특정후견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 및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특정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특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9제2항).

- 』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9제2항).
 - 》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특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의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 . 특정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 특정후견감독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 》특정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특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 》 여러 명의 특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후견감독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 ... 특정후견인의 가족
 - 。미성년자
 - 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및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779조).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특정후견사무의 감독 등

- 특정후견감독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특정후견감독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특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특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1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 특정후견감독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 특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특정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3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 특정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특정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및 제959조의12).
- _ 보수와 직무비용의 처리
 - 』 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특정후견감독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 특정후견감독인이 특정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및 제959조의10제2항).

3.4.4. 특정후견의 종료

■ 특정후견은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종료됩니다.

- 특정후견 개시 원인의 소멸 등
 - 특정후견은 별도의 특정후견종료 심판 없이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원인이 되는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 후견 관계의 종료
 -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59조의9제2항).
 - 。 특정후견인 사망
 - 。 특정후견인 사임
 - . 특정후견인 변경

■ 특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_ 관리의 계산
 -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및 제959조의13).
 - 》 위의 계산은 특정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 957조제2항 및 제959조의13).
 -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및 제959조의13).
 - 특정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특정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특정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및 제959조의13).
- 특정후견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
 - 특정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특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특정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의13).



- 상대방에 대한 특정후견종료의 통지
 - 특정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의13).
- 특정후견종료등기
 -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특정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특정후견종료등기는 피특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특정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3.5. 임의후견

3.5.1. 임의후견의 개시

- ☑ 성인은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또는 그 가능성을 대비해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 "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1항 참조).
- □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며,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 후견계약 체결방법
 -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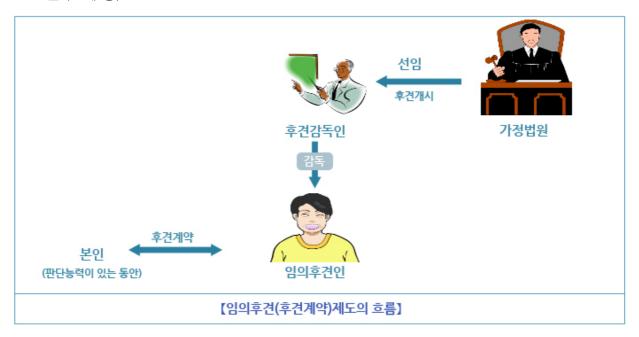
※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어디서 작성하나요?

-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2조 참조).
-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 356조제1항).
- 》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함)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17조 및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
 - 및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 제959조의14제3항).
 -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u>성년후견-임의후견-임의후견 감독</u>>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됩니다(「민법」 제 959조의20제1항).



[그림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블로그]

- 임의후견 개시의 제한
 - 의의후견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56조의17제1항).
 - 。미성년자
 - 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및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항방이 불분명한 사람
 - 및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자

의의후견인은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수행합니다.

- 』임의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 일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수행해야 합니다(「민법」 제 959조의14제4항).



3.5.2. 임의후견 감독

- 의의후견감독제도는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임의후견감독제도의 의의
 - 』 임의후견의 감독제도는 임의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임의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 의 임의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선임합니다.
 -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1항).
 - 》위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 959조의15제2항).
 - 』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3항).
 -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59조의15제4항).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은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 』 다만,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성년후견제도」(<u>전자소송포털</u>)].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임의후견인) 각 1통
 - 🄉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사건본인) 1통
 - ፟ 청구인 및 후견감독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진단서 1통
 -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임의후견인의 적격성, 자질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3항 및 제956조의17제1항).
 - 』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임의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임의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임의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임의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제936조제4항, 제940조의7 및 제956조의16제3항).

- 》 가정법원은 위의 경우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5).
- 》 또한, 선임심판을 하는 경우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및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그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6제1항제1호).
-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정신능력의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해 임의후견을 개시할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20제2항 본문).
 -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59조의20제2항 단서).
 - ※ 성년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성년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한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한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특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특정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의 고지

-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및 임의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및 임의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게 심판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제1항).
- 』 위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제2항).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 』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 939조, 제940조의7 및 제959조의16제3항).
- 』 가정법원은 피임의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임의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임의후견인, 친족,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제940조의7 및 제959조의16제3항).
- 임의후견감독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 』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6제2항).

의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 임의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 일의후견감독인은 피임의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제940조의7 및 제956조의16제3항).



- 》임의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6조의16제3항).
-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제3항 및 제956조의16제3항).
- 및 법인도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6조의16제3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제959조의15제5항및 제956조의16제3항).
 - 》임의후견인의 가족
 - 。미성년자
 -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및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항방이 불분명한 사람
 - 및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 ※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779조).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의의후견사무의 감독 등

- 임의후견감독인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 959조의14제4항).
- 임의후견감독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의후견감독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제940조의7 및 제956조의16제3항).
- 』임의후견감독인은 피임의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제2항 및 제959조의16제3항).
- 임의후견인과 피임의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임의후견감독인이 피임의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3항 및 제959조의16제3항).
- 및 임의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임의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임의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및 제959조의16제3항).
- 피임의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 피임의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임의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그를 대신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7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16제3항).



- 》 위의 경우 피임의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임의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7조의2제4항 및 제959조의16제3항).
- 』임의후견감독인이 피임의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임의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매도,임대,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임대차의 해지,전세권의 소멸,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7,제947조의2제5항 및 제959조의16제3항).
-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해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합니다(「민법」 제959조의16제1항).

_ 보수와 직무비용의 처리

- 』 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임의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임의후견인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임의후견감독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55조 및 제959조의16제3항).
- 임의후견감독인이 임의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임의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55조의2 및 제959조의16제3항).

3.5.3. 임의후견의 종료

의 임의후견은 후견계약 철회, 해지, 임의후견인 해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 교 후견계약의 철회
 - 』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아직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제1항).
- _ 후견계약의 해지
 - 』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면 본인의 능력이 저하된 이후일 것이므로 후견계약의 자유로운 해지는 자칫 본인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제2항).
- 』임의후견인의 해임
 - 』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게 된 경우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임에 의해 임의후견은 종료됩니다(「민법」 제959조의17제2항).
-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에 의한 종료
 - 일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후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민법」 제959조의20제1항 후단).
- 사망, 파산 등의 사유에 의한 종료
 -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사망이나 파산, 임의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에 의해서도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 후견계약이 종료되면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 일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
 - 후견계약이 종료되면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59조의19).

- □ 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임의후견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
 - 임의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임의후견감독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제940의7 및 제959조의16제3항).
 - 』 상대방에 대한 임의후견종료의 통지
 - 』임의후견종료의 사유는 임의후견감독인이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제940의7 및 제959조의16제3항).

■ 임의후견종료등기

-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의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후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에따라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임의후견종료등기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임의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